

신문재판으로 공정한 재판이 방해됐다 하여 유죄판결을 파기

Irvin v. Dowd

33b U.S. 717, 81S. Ct, 1639. 6L . Ed.2d 751 (1961)

어빈(Irvin) 사건은, 재판전의 공표가 공정한 배심이 있기 전에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미연방대법원이 주의 형사유죄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1961년까지 없었던 첫번째 사례이다. 이 살인사건의 피고인 레슬리 어빈(Leslie Irvin)은 인디애나 주의 에반스빌 근방에서 발생한 여섯 명의 피살자들에 관해 광란적인 흔적을 추적해서 피고에게 불리한 편견을 갖게 하는 잇다른 보도들에 의해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살자들 가운데 2명은 1954년 12월에, 나머지 4명은 1955년 3월에 살해되었다. 이 범죄 사건들은 현지에서 뉴스 매체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고, 에반스빌에 있는 반더버그 군과 인접한 기브선 군을 뒤흔들어 놓았다. 가석방자인 레슬리·어빈은 강도와 부도수표발행 혐의로 1955년 8월에 체포되었다. 그 후 몇일 이내에, 에반스빌 경찰과 검찰관은 「미친개 어빈」이 일가족 3명을 포함한 피살자 6명을 모두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공표했다. 뉴스 매체들은 전쟁이라도 일어난 날(일)처럼 어빈 사건을 묘사했고, 법집행관들에 의해서 이렇게 교사되었다고 부언했다. 많은 기사들이 그가 「6명을 살해한 명백한 살인자」라고 어빈의 재판 전에 공표하거나 방송했다. 어빈의 법원지정변호사는 그가 어빈의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 변호사의 입장을 변명하는 매체는, 만약 그가 그 혐의자의 변호를 거부한다면 그는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빈은 곧 반더버그 군 배심에 의해서 6명에 대한 살인자로 기소되었다. 어빈의 법원지정변호사는 재판지 변경을 요청했고, 그리고 허락을 받았다. 그런데 그 재판지 변경은 다만 반더버그 군으로부터 뉴스매체에 의해 「미친 개 어빈」이라는 유사한 편견이 내포된 기사를 접한 에반스빌 근방의 기브선 군으로 변경되었다. 그때 어빈의 변호사는 그러한 광범위하고 선동적인 공표를 접하지 않는 곳에서 재판을 받기 원했기 때문에 기브선 군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다시 재판지 변경을 요청했다. 이 신청은 인디애나 주법이 단 한번의 재판지 변경만을 허락한다는 구실로 거절되었다. 재판은 1955년 11월 14일에 시작되었다. 배심원이 되리라고 예상되는 430명이 검찰당국과 피고인측의 변호사들에 의해서 심문되었는데, 약 90%인 370명이 어빈이 유죄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 견해들은 단순한 혐의로부터 절대적인 확신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어빈의 변호사는 그의 확정된 20명의 기피자들 모두를 지적했다[주 .소송사건에 관해 배심원들의 불편부당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편견을 갖고 있다든가 또는 그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하는 이유에 의해서 배심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상되는 배심원들을 「엄격하게 진실을 말하는 심문」(voir dire examination)을 통하여, 피고가 많은

수의 배심기피자들을 기피하도록 허락된다. 배심원 전원이 선서하면, 피고는 형사소송에서 보통 15~20 명의 약정된 수의 확정된 기피자들을 선정한다]. 법원에 의해서 12 명의 배심원들이 최종적으로 수락되었을 때, 그 배심원들 모두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기피했다. 그는 수락된 배심원들 중에 4 명이 어빈이 유죄라는 말을 한 사람들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재판은 열렸고 어빈은 유죄평결을 받아 사형을 선고받았다. 어빈의 유죄판결은 그의 재심신청을 거부한 인디애나주 대법원에 의해서 유지되었다. 어빈 사건이 두 차례에 걸쳐서 미연방대법원에 항소되었으나 1961 년까지 국가최고법정은 그 사건의 잘 잘못에 대해 판결하지 않았다. 그런데 1961 년에 연방대법원은 어빈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결론은 비록 어빈이 궁극적으로 유죄라고 할지라도 재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클라크 판사는 피고의 권리와 관련된 편견을 지닌 보도의 효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클라크 판사는 법정이 배심원들의 형사심리에 있어서 관련된 사실이나 쟁점들에 관해 전적으로 무지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배심원은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에 입각해서 평결을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클라크 판사는 어빈이 당한 공표를 고려해서 「공표가 편견을 조성한 것이 명백하고 유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어빈을 위한 논거들이 인디애나 주 기브슨 군에서 그에 대한 심리가 있기 전 6~7 개월 동안에 홍수처럼 보도된 일련의 신문 제목들, 기사들, 만화들 그리고 사건들이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서 또 그 증거들은 그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신문들이 그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95%에게 규칙적으로 배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 나 전체에 도달할 수 있는 에반스빌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역시 그 사건을 광범위하게 방송했다. 클라크 판사는 배심원석에 마지막으로 앉은 12 명의 배심원들 중에 8 명이 어빈이 유죄라고 믿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배심원은 그가 「어빈이 무죄라고 의심되는 점을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 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배심원은 그가 「어빈의 유죄에 대한 어떤 확실한 고정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클라크 판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의심할 바 없이 각 배심원들은 자신이 피고에게 공정하고 공평했다는 말을 했을 때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실을 표명했다. 그러나 자신이 그의 동료들 앞에서 이러한 진술을 할 때 요구되는 심리적영향은 가끔 엄격하고 준엄한 아버지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것이다. 많은 장소에서, 많은 횟수에 걸쳐서 이런 종류의 공평한 진술은 부담감 없이 행해질 수 있다. 배심원들 중에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듣고 그리고 본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피고에 대한 공중의 분노가 너무 거세지 않은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증언을 듣기도 전에 피고의 유죄를 확신한 2/3 의 배심원들이 속해 있는 배심이 아닌 다른 배심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너무 요구되고 있지 않았다.』 일치하는 견해로, 프랑크푸르터 판사는 「법정에서의 재판대신에 배심전에 행해진 신문들에 의한 재판」에 대해 혹독한 비난을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이 소송에서처럼 너무 자주 검찰관들과 합작한 선동적인 기사들 때문에 배심판이 왜곡되었다는 실재적인 청구에 의해서 유죄판결을 재심하도록 간곡히 요청되어 판결을 한 것은 당 법정이외에 전국의 어느 주에서도 결코 없었다. 검찰과 신문의 합작은, 만약 불가능하지 않다면, 재판 전에 그리고 심지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가능한 배심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배심원이 공판정에 제출된 증거를 채택할 가능성을 보호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했다. 실제로 우리 헌법에 의해 보장된 품위의 손상으로 인한 외부의 영향력이 때때로 너무 강력해서, 피고가 배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재판을 포기하도록 강요된다.』 프랑크 푸르터 판사는 재판 전 공표를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제한이 취해졌어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으로 그의 견해를 매듭지었다. 『당 법정은 형사재판의 공정한 집행이 우리 헌법체계하의 또 다른 보호인 언론의 자유를 경시해도 된다는 판단을 아직까지 내린 적이 없다. 그런데, 유죄판결이 파기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배심원의 편견된 심리가 오심을 야기시키는 한, 당 법정은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직업적으로 열심히 배심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헌법상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적이 아직까지 없다.』 어빈의 소송은 지방법원에 환송되었고, 어빈은 감정이 누그러진 분위기 속에서 인디애나 법정에 의해 무기징역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그의 변호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털어놓았다.